[별지 제6호 서식]

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

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장표본을 촬영하여 저작권을 획득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(이하 '권리자'라 한다)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(이하, '이용자'라 한다)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1. 본 협약은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.

2. 본 협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.
 - 대상 :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장표본을 이용하여 권리자가 작성, 편집 또는 촬영한 저작물(보고서, 도감 등의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며, 이하 포괄하여 '저작물'이라고만 한다)
 - 권리 : 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

3. 이용자는 저작물을 사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저작자인 권리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

4. 권리자는 정부 3.0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의 방침에 따라 제3자가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.

5. 이용허락의 기간은 저작재산권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6. 권리자는 이용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보관한다.

20 . . .

권리자 : *성 명* (인 또는 서명)

주소 및 연락처

이용자 :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(인 또는 서명)